

|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| 2212207      |
| 의 퇴 인  | 서천호 의원       |
| 회 답 일  | 2026. 3. 11. |
| 추 계 번호 | 25B4457      |

#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## I. 비용추계 결과

□ 개정안에 따라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대상에 만 70세 이상의 여성농어업인을 포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73억원, 2031년 311억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,458억원(연평균 292억원)으로 추계됨

○ (국 비) 811억원(연평균 162억원)

○ (지방비) 647억원(연평균 130억원)

- 본 추계는 건강검진 대상자 수 및 건강검진료 등 일정 요인을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, 향후 건강검진 대상자 수, 검사비용 단가, 수검률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억원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2031 | 합계    | 연평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|
| 안 제11조의3(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) | 273  | 282  | 291  | 301  | 311  | 1,458 | 292 |
| 국비(50%)                        | 152  | 157  | 162  | 167  | 173  | 811   | 162 |
| 지방비(40%)                       | 121  | 125  | 129  | 134  | 138  | 647   | 130 |

주: 1. 추가 건강검진 대상자는 만 70세 이상의 여성농어업인으로 가정

2. 검사주기는 2년에 1회로, 1인당 검사비용은 22만원으로 가정하며,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
3. 국비 및 지방비 부담률은 50:40으로 가정(자부담 10%)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## I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11조의3(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) |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만 50세 이상의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(제1항) | 의무규정 |

### 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#### 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| 추계여부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11조의3(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) | ○    | • 현행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참고하여 추계 |

#### 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현행법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
- 해양수산부는 만 50세 이상의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여성어업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, 농림축산식품부는 만 50~69세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추계에서는 만 70세 이상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에 대해 추계함

[표 2] 여성농업인 및 여성어업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예산 현황: 2022~2026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                | 세부사업                   | 2022  | 2023  | 2024  | 2025  | 2026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여성농업인<br>(농림축산식품부) |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(4135-397) | 1,990 | 1,990 | 4,300 | 6,500 | 9,640 |
|                    | -검진비                   | 1,690 | 1,690 | 3,300 | 5,500 | 8,640 |
|                    | -검진관리비                 | 300   | 300   | 1,000 | 1,000 | 1,000 |
| 여성어업인<br>(해양수산부)   | 어업인 삶의 질 향상(3440-312)  | 371   | 371   | 1,687 | 1,172 | 1,011 |
|                    | -검진비                   | 321   | 321   | 1,163 | 805   | 536   |
|                    | -행정비                   | 50    | 50    | 524   | 367   | 475   |

자료: 각 부처, 「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(II-1)」

- 검사비용, 검사주기, 수검률, 및 지원율은 현행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준용
  - (검사비용) 1인당 22만원
    - 추계기간 동안 1인당 검사비용은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  - (검사주기) 2년에 1회
    - 추계기간 동안 특수건강검진 대상 여성농어업인 수 50%
  - (수검률) 50%
    - 사업설계 당시 적용한 50% 적용
  - (지원율) 국비 50%, 지방비 40%
    - 현행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의 지원율 준용(자부담 10%)
  
- 건강검진 대상자 수 증가에 따라 검진관리비가 일부 증가할 수 있으나, 그 증가분을 예측하기 곤란하여 본 추계에서는 추계대상에서 제외함
  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### 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건강검진 대상 만 70세 이상 여성농업인 수 전망

-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연령대별 여성농업인 현황은 다음과 같음

[표 3] 연령대별 여성농업인 현황

(단위: 명)

|              |         | 2021      | 2022      | 2023      | 2024      | 2025 | 연평균<br>증가율 |
|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|
| 농가인구<br>(여성) | 전체      | 1,148,292 | 1,170,957 | 1,172,219 | 1,162,603 | -    |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50세 미만  | 89,254    | 86,829    | 82,066    | 75,912    | -    | △5.25      |
|              | 50세~69세 | 603,438   | 605,399   | 601,284   | 585,219   | -    | △1.02      |
|              | 70세 이상  | 455,600   | 478,729   | 488,869   | 501,472   | -    | 3.25       |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

- 개정안에 따른 건강검진 추가대상은 최근 4년(2021~2024)간 만 70세 이상 여성농업인 수와 그 추이를 바탕으로 추산

[표 4] 건강검진 대상자 산출: 2027~2031년

(단위: 명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5    | 2026    | 2027           | 2028           | 2029           | 2030           | 2031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전년도 여성농업인(A, 명)              |         | 517,770 | 534,597        | 551,972        | 569,911        | 588,433        | 607,557        |
| 연평균 증가율(B)                   | 3.25%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해당연도 여성농업인<br>[C=A×(1+B), 명] | 517,770 | 534,597 | 551,972        | 569,911        | 588,433        | 607,557        | 627,303        |
| 건강검진 대상자<br>(D=C/2, 명)       |         | 267,299 | <b>275,986</b> | <b>284,955</b> | <b>294,216</b> | <b>303,779</b> | <b>313,651</b> |

주: 추계기간 동안 최근 4년(2021~2024)간 만 70세 이상의 여성 농가 연평균 증가율(3.25%)을 변동 없이 적용하고, 현행 검사 주기 2년 적용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#### 나. 1인당 건강검진료

- 1인당 특수건강검진 단가는 현행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참고하여 산정

○ 1인당 220,000원

－ 추계기간 동안 1인당 검사비용은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
#### 다. 검사주기, 수검률 및 지원율

- 검사주기, 수검률 및 지원율은 현행 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 준용

○ (검사주기) 2년에 1회

－ 추계기간 동안 건강검진 대상 만 70세 이상 여성농어업인 수 50%

○ (수검률) 50%

－ 사업설계 당시 적용한 50% 적용

○ (지원율) 국비 50%, 지방비 40%

－ 현행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의 지원율 준용(자부담 10%)

## 라. 추계결과

- 추계결과, 건강검진 지원사업 대상에 만 70세 이상의 여성농어업인을 추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,458억원(연평균 292억원)으로 추계됨
- (국 비) 811억원(연평균 162억원)
  - (지방비) 647억원(연평균 130억원)

[표 5]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명, 억원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7    | 2028    | 2029    | 2030    | 2031    | 합계    | 연평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|
| 건강검진 대상자<br>(A, 명)             | 275,986 | 284,955 | 294,216 | 303,779 | 313,651 | —     | —   |
| 1인당 건강검진료<br>(B, 만원/명)         | 22      | 22      | 22      | 22      | 22      | —     | —   |
| 수검율(C, 50%)                    | 50%     | 50%     | 50%     | 50%     | 50%     | —     | —   |
| 추가재정소요<br>(D=A×B×C×90%,<br>억원) | 273     | 282     | 291     | 301     | 311     | 1,458 | 292 |
| 국비(50%)                        | 152     | 157     | 162     | 167     | 173     | 811   | 162 |
| 지방비(40%)                       | 121     | 125     | 129     | 134     | 138     | 647   | 130 |

주: 1. 추가 건강검진 대상자는 만 70세 이상의 여성농어업인으로 가정  
 2. 검사주기는 2년에 1회로, 1인당 검사비용은 22만원으로 가정하며,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
 3. 국비 및 지방비 부담률은 50:40으로 가정(자부담 10%)  
 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## 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건강검진 대상자 수 및 건강검진료 등 일정 요인을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, 향후 건강검진 대상자 수, 검사비용 단가, 수검률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## V. 작성자

### □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경제비용추계과 | 김성원 | 예승우 |

### □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|
| 김성원 | 02-6788-4650 | holystone@na.go.kr |